

2021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(경력)경쟁 임용시험계획 공고

2021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(경력)경쟁 임용시험(제1회, 제2회)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19일

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

구 분		직 렬	직 류	직급	선발예정인원	시 험 과 목	비고	
총 계					479			
제1회 임용 시험 (6.5)	소계(24개 직류)				448			
	공개 경쟁	행 정 직	일반행정(일 반)	9급	175	필수(3) 국어, 영어, 한국사, 선택(2)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		
			일반행정(장애인)		17			
			일반행정(저소득)		9			
		세 무 직	지 방 세 (일 반)	9급	10	필수(3) 국어, 영어, 한국사, 선택(2) 지방세법, 회계학(회계원리,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)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, 사회, 과학, 수학 중 2과목		
		전 산 직	전 산	9급	8	국어, 영어, 한국사, 컴퓨터일반, 정보보호론		
		사 회 복 지	사회복지(일 반)	9급	45	필수(3) 국어, 영어, 한국사 선택(2) 사회복지학개론, 행정법총론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 중 2과목		
			사회복지(장애인)	9급	3			
			사회복지(저소득)	9급	4			
		사 서 직	사 서	9급	4	필수(3) 국어, 영어, 한국사, 선택(2) 자료조직개론, 정보봉사개론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 중 2과목		
		공 업 직	일 반 기 계	9급	13	국어, 영어, 한국사, 기계일반, 기계설계		
			일 반 전 기	9급	7	국어, 영어, 한국사, 전기이론, 전자기기		
			일 반 화 공	9급	3	국어, 영어, 한국사, 화학공학일반, 공업화학		
		농 업 직	일 반 농 업	9급	3	국어, 영어, 한국사, 재배학개론, 식용작물		
			축 산	9급	1	국어, 영어, 한국사, 가축사양, 가축육종		
		녹 지 직	산 림 자 원	9급	3	국어, 영어, 한국사, 조림, 임업경영		
		보 건 직	보 건	9급	21	국어, 영어, 한국사, 공중보건, 보건행정		
		식 품 위 생	식 품 위 생	9급	1	국어, 영어, 한국사, 식품위생, 식품화학개론		
		간 호 직	간 호	8급	29	국어, 영어, 한국사, 간호관리, 지역사회간호		
		환 경 직	일 반 환 경	9급	13	국어, 영어, 한국사, 화학, 환경공학개론		
			일 반 토 목	9급	26	국어, 영어, 한국사, 응용역학개론, 토목설계		
		시 설 직	건 축	9급	27	국어, 영어, 한국사, 건축계획, 건축구조		
			지 적	9급	5	국어, 영어, 한국사, 지적측량, 지적전산학개론		
		방 재 안 전	방 재 안 전	9급	2	국어, 영어, 한국사, 재난관리론, 안전관리론		
		방 송 통 신	통 신 기 술	9급	5	국어, 영어, 한국사, 통신이론, 전자공학개론		
		경력 경쟁	수 의 직	수 의	7급	4	수의미생물학, 수의보건학, 수의전염병학	
			운 전 직	운 전	9급	5	사회,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	
			해 양 수 산	선 박 항 해	9급	1	물리, 선박일반, 항해	
	의 료 기 술		의료기술(치위생사)	9급	1	생물, 공중보건, 의료관계법규		
			의료기술(임상병리사)	9급	2			
			의료기술(물리치료사)	9급	1			

구 분	직 렬	직 류	직급	선발예정 인 원	시 험 과 목	비고
제2회 임 용 시 험 (10.16)	소 계(10개 직류)			31		
	공개 경쟁	행 정 직	일 반 행 정	7급	15	필수(6) 국어(한문포함), 영어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, 한국사(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), 헌법, 행정법, 행정학 선택(1) 경제학원론, 지방자치론, 지역개발론
	경력 경쟁	약 무 직	약 무	7급	2	화학개론, 약제학, 약전학
		수의연구	수 의	연구사	1	필수(2) 수의미생물학, 수의보건의학 선택(1) 수의전염병학, 수의병리학
		환경연구	환 경	연구사	2	필수(2) 환경공학, 환경화학 선택(1) 대기오염관리, 수질오염관리
		보건연구	공 중 보 건	연구사	2	필수(2) 보건학, 역학 선택(1) 환경보건학, 식품화학
		공 업 직	기 계 운 전	9급	1	물리, 기계일반, 기계설계
		공 업 직 (고 졸)	일 반 전 기	9급	1	물리, 전기이론, 전기기기
			일 반 기 계	9급	1	물리, 기계일반, 기계제도
		시 설 직 (고 졸)	일 반 토 목	9급	3	물리, 토목일반, 측량
			건 축	9급	3	물리, 건축계획, 건축구조

- 선발예정인원은 대전광역시 일괄모집이며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기관별로 배정합니다.
- 근무지역: 대전광역시, 5개 자치구, 주민센터
-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타 시·도, 타 기관 전보(전출)를 제한합니다.
 - 공개경력임용시험(합격 임용 후 3년 간), 경력경쟁임용시험(합격 임용 후 4년 간)
-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.
 - * 2022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점수 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며, 일반행정 직류는 사회, 과학, 수학이 일반행정 직류를 제외한 직류는 행정학개론, 사회, 과학, 수학이 시험과목에서 제외됩니다.
- 시험문제 출제범위 안내
 - 9급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
 - 사회: 정치와 법, 경제, 사회·문화
 - 과학: 물리학 I, 화학 I, 생명과학 I, 지구과학 I
 - 수학: 수학 I, 수학 II, 확률과 통계, 수학
 - 7급 행정학(지방행정 포함)
 - * 사회, 과학, 수학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과과정이 적용됩니다.

2. 시 험 방 법

구 분	1차 시험	2차 시험	3차 시험	비 고
7급 ~ 9급, 연구사	선택형 필기시험 (1.2차 병합실시)		면접시험	

- *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- * 필기시험 합격자 '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'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.
- *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, 과목별 20문항, 과목별 100점 만점이며,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(1문항 1분 기준)입니다.

3. 응 시 자 격

가. 응시결격사유 등

-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현재를 기준으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거나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에 해당 되는 자 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제66조(정년)

-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□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-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-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-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-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

- 1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2.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3.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4.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-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-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- 1. 공공기관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-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각 목 참조)
-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나. 지역제한

- 2021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,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.

- 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시험)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
 - *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 - ②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 - *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
 - *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

다. 응시연령

직 급	응시연령	해당생년월일	비 고
7급, 연구사	20세 이상	2001.12.31. 이전 출생자	
8급, 9급	18세 이상	2003.12.31. 이전 출생자	

- * 제2회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(2004.12.31. 이전 출생자) 해당자도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.

라.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하며,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(직류)외에 다른 직렬(직류)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(단, 중복접수 불가)
-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, 응시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(장애인등록증 등)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-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“붙임 1” 「장애유형별(임산부 포함)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」를 참조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,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반드시 방문 또는 등기우편(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,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대전광역시 자체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편의 지원 내용이 일부(점자문제지, 음성자원 등) 제한됩니다.

- 제1회 임용시험: 2021. 4. 9.(금) ~ 4. 13.(화)
- 제2회 임용시험: 2021. 7. 15.(목) ~ 7. 19.(월)

마.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주거, 교육,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은 자)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(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)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- 군복무(현역, 대체복무)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,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(지원)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(지원대상자)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. [다만,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, 이 경우 급여(지원)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, 급여(지원)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]

*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·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(지원대상자)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(지원대상자)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.[다만,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(지원대상자)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, 이 경우에도 급여(지원)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, 급여(지원)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]

* 단,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(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)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

-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(수급기간 명시), 한부모가족증명서(지원기간 명시)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- 저소득층 구분모집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(직류) 외의 다른 직렬(직류)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. (단, 중복접수 불가)

* 수급(지원)기간이 명시된 수급자(한부모가족)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(동일세대원에 한함)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방문 전 시·군·구청 기초생활보장·한부모가족 담당자(복지정책과, 사회복지과 등)에게 우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바. 응시 자격요건

- 자격증·면허증·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.

시험명	직급	직 류	선발인원	학력·자격(면허)증 제한
공개 경쟁 임용 시험	8급	간 호	29	• 조산사, 간호사
	9급	전 산	8	• 기술사(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, 정보관리) • 기사(전자계산기, 정보통신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, 정보보안) • 산업기사(전자계산기제어, 정보통신, 사무자동화, 정보처리, 정보보안),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
		사회복지	52	• 사회복지사 3급 이상
		사 서	4	• 1 . 2급 정사서, 준사서
		지 적	5	• 기술사(지적), 기사(지적), 산업기사(지적)
경력 경쟁 임용 시험	연구사	수의연구 (수 의)	1	• 수의사
		환경연구 (환 경)	2	• 환경공학, 위생공학, 화학, 화학공학, 농화학, 환경화학, 도시계획학, 약학, 토목공학, 식품공학, 물리학, 천문학, 기상학, 지질학, 지리정보학, 산림자원학,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		보건연구 (공중보건)	2	• 보건학, 의학, 한의학, 치의학, 약학, 한약학, 간호학, 화학, 생물학, 식품학, 식품가공학, 수의학, 축산학, 낙농학, 동물학, 위생공학,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	7급	수 의	4	• 수의사
		약 무	2	• 약사, 한의사, 한약사
	9급	운 전	5	•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
		선박항해	1	• 항해사 1급 내지 6급
		기계운전	1	• 굴삭기 운전 기능사

시험명	직급	직 류	선발인원	학력·자격(면허)증 제한
경력 경쟁 임용 시험	9급	의료기술 (치과위생)	1	• 치과위생사
		의료기술 (임상병리)	2	• 임상병리사
		의료기술 (물리치료)	1	• 물리치료사
	9급 (고졸)	일반전기	1	• 전기, 전자, 원자, 통신, 물리와 관련한 기술계고를 졸업(예정)하였고, 출신(재학)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		일반기계	1	• 기계, 자동차(자동차정비), 운전, 판금, 용접, 배관, 기관, 인쇄공업, 계량과 관련한 기술계고를 졸업(예정)하였고, 출신(재학)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		일반토목	3	• 토목(토목건설, 목공), 농업토목, 건축(건축설비)와 관련한 기술계고를 졸업(예정)하였고, 출신(재학)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		건축	3	• 건축(건축설비)과 관련한 기술계고를 졸업(예정)하였고, 출신(재학)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
- 응시자격 중 학력 및 자격(증)을 필요로 하는 직렬(직류)은 해당 자격증(면허증) 또는 학위를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, 원서접수 시 자격증(면허증),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예정인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* 자격증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하고,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,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.

- 환경연구·보건연구직은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(전문대학을 제외한다)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(이하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)로서,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하며, “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”의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“붙임 4”에 따라 판단하며,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“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”은 대학교에서 비전공한 사람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·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며, 해당(동일)학과의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응시 자격요건을 자격증으로 제한하는 경우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사. 운전직렬 세부 자격요건

-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 후,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(면접시험 최종일 기준)
- 대형버스 규격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1] 에 제시된 '대형 승합자동차'기준에 따르며,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군(軍)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, 군 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,

<제출서류> -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

-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사본 1부
-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(사업자등록업체 발행 대형버스 1년 이상 운전경력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<http://www.nhis.or.kr>)에서 발급 가능, 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)
- *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는 “붙임 2”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위의 제출서류만으로 경력인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, 서류심사 결과 불합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(사업체에서 발행한 자체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“붙임 2”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)

아. 고교졸업자 구분모집 응시 자격요건

- 대전광역시내 소재한 기술계고 졸업한 사람(2022년 2월 졸업 예정인 사람 포함) 또는 대전광역시 외 타 지역 소재 기술계고 졸업한 사람(2022년 졸업 예정인 사람 포함) 중 거주지 제한 요건 충족한 사람으로서 각급 대학(방송통신대, 사이버대 포함)에 진학하지 않았거나, 2021. 1. 1. 현재 각급 대학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출신(재학)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 가능합니다.
- * 응시연령은 18세 이상(2003.12.31. 이전 출생자)이거나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(2004.12.31. 이전 출생자) 17세도 응시가 가능합니다.(“붙임 3” 안내참조)
- * 기술계고(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)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의 대학 재학 또는 대학 졸업이 확인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.

- 고졸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직렬별 해당학과 여부는 '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(노동부 고시 제2012-49호) 직무분야별 학과'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,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.
- 고졸경력경쟁 임용시험의 학교장 추천서는 2021. 6. 9.(수) ~ 6. 10.(목)까지 대전광역시 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를 경유하여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실로 제출해야 합니다. 기타 성적, 추천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"붙임 3" 「2021년도 고졸(예정)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안내」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응시원서는 2021. 7. 5.(월) ~ 7. 9.(금)까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접수해야 합니다.

4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
시 험 명	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[단, 토,일요일(공휴일)은 접수(취소)할 수 없음]	시험구분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자	합격자 발표일
제1회 임용시험	접수: 3.29.(월) 09:00 ~ 4.2.(금) 18:00 (취소마감일:4. 8.(목) 24:00)	필기시험	5.12.(수)	6. 5.(토)	7. 2.(금)
		면접시험	7. 2.(금)	7.29.(목)~8.3.(화)	8.27.(금)
제2회 임용시험	접수: 7. 5.(월) 09:00~ 7. 9.(금) 18:00 (취소마감일:7.14.(수) 24:00)	필기시험	9.16.(목)	10. 16.(토)	11.5.(금)
		면접시험	11. 5.(금)	11.23.(화)~11.24.(수)	12.7.(화)

-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시험장소 공고, 합격자 발표, 성적 안내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(<http://daejeon.go.kr>)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전(서류제출일)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, 인성검사 일시/장소 등 관련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.
- * 인성검사에 불참하는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됩니다..

5. 장애인 편의지원 및 필기시험 성적 등 사전공개

시 험 명	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결과 사전공개 일정	필기시험 성적(원점수) 및 가산점 인정여부 사전공개 일정	비 고
제1회 임용시험	2021. 4. 16.(금)	2021. 6. 23.(수) ~ 6. 24.(목) [재검증결과공지: 6. 28.(월)]	
제2회 임용시험	2021. 7. 23.(금)	2021. 10. 27.(수) ~ 10. 28.(목) [재검증결과공지: 11. 1.(월)]	

6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방법 및 시간

- 접수방법: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서 접수 가능합니다.
 - *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,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(☎1522-0660)로 하시면 됩니다.
- 접수시간
 - 제1회 임용시험: 2021. 3. 29.(월) 09:00 ~ 4. 2.(금) 18:00(기간 중 24시간 접수)
 - * 제1회 임용시험 취소기간: 2021. 3. 29.(월) 09:00 ~ 4. 8.(목) 24:00(기간중 24시간 취소)
 - 제2회 임용시험: 2021. 7. 5.(월) 09:00 ~ 7. 9.(금) 18:00(기간 중 24시간 접수)
 - * 제2회 임용시험 취소기간: 2021. 7. 5.(월) 09:00 ~ 7. 14.(수) 24:00(기간중 24시간 취소)

나. 응시수수료 등 비용

- 8·9급: 5,000원, 7급 및 연구사: 7,000원
 - * 이외 소정의 처리비용(신용카드 결제, 휴대폰 결제, 계좌이체 등 수수료) 소요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료 전액 환불됩니다.

다. 사진등록

- 사진파일 규격: 파일형식 JPG, 크기 3.5cm × 4.5cm, 해상도 300DPI
- 얼굴 정면이 나타내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,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.
 - *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 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, 가급적 원판을 보유한 사진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라. 유의사항

- 전국 동시 실시하는 공개경쟁·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.

-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 가능하며, 응시직렬(직류)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표 출력은 당해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([http:// local.gosi.go.kr](http://local.gosi.go.kr))에서 가능하며, 원서접수증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응시직렬을 달리하여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.
-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자격증 종류(가산비율) 및 자격번호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제1회 임용시험[6. 5.(토) ~ 6. 7.(월)], 제2회 임용시험[10.16.(토) ~ 10.18.(월)]
- 장애인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(임신부 포함)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2회 임용시험 중 고졸경력경쟁 임용시험의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은 2021. 6. 9.(수) ~ 6. 10.(목)이며, 대전광역시 교육청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에 제출된 사람에 한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.
-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

7.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(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)

가.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

시험의 종류		기준점수	청각장애
토플(TOEFL)		PBT 530점 이상	PBT 352점 이상
		IBT 71점 이상	-
토익(TOEIC)		700점 이상	350점 이상
텡스 (TEPS)	(2018. 5. 12 이전에 실시된 시험)	625점 이상	375점 이상
	(2018. 5.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)	340점 이상	204점 이상
지텔프(G-TELP)		Level 2의 65점 이상	-
플렉스(FLEX)		625점 이상	375점 이상

나.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범위

- 해당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,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
 -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(舊 2,3급)인 사람
 -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고 어음(말소리) 분별력이 50%이하인 사람
(의사진단서 반드시 제출)
- 의사진단서는 해당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되며,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상태를 점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,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,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제외 대상임을 표시하고 유효한 기간 내의 진단서 원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(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,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)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<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>

상기인은

- 1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어음(말소리) 분별력을 검사한 결과,
- 2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, 어음(말소리)분별력이 30%인 사람으로서
- 3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.

다.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

- 2016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2회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 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

- 2016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, 일본에서 응시한 TOEIC,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는 제2회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
- 다만,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(TOEIC, TOEFL, TEPS, G-TELP)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.
 - 토익, 텡스, 지텔프: 자체 성적 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
 - 토플: 자체 성적 유효기간 내 매월 1일 ~ 10일 등록
 - * 플렉스의 경우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므로 사전등록대상 아님
 - *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

라. 성적 제출방법

-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, 등록번호,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,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.[2021.10.11.(월) ~ 10.15.(금)까지]
 - *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, 단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경우 인사혁신처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공동이용 가능합니다.

8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(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)

가. 기준점수(등급)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) 2급 이상

나.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

-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, 제2회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.
 - *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(정기)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

다. 성적 제출방법

-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, 인증번호,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,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에 사전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 후 제2회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추가등록을 해야합니다.
[2021.10.11.(월) ~ 10.15.(금)까지]

9. 양성평등채용목표제

가. 대상시험: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

나. 채용목표: 30%

-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,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,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.

다. 실시방법

- 어느 한 성(姓)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에서 40%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-3점 이상인 해당 성(姓)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 함
 - *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(性)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(性)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.

10. 가산특전

가.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

구 분	가산비율	비 고
취업지원대상자	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	·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
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	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	
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	과목별 만점의 3~5% (1개의 자격증만 인정)	· 취업지원대상자/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

- * 직렬공통으로 적용된 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.
- *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채 영어, 한국사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나.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)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을 가산합니다.
-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(직류)별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(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,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)
- *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(☎1577-0606)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.

다. 의사상자 등 대상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)
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5% 또는 3%)을 가산합니다.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34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(직류)별 선발예정인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(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,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)
- *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(044-202-3255)에 확인하여야 합니다.

라.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)

- 행정·세무·사회복지·보건·의료기술직
 -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%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

의 5%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직 렬	직 류	대 상 자 격 증(면허증)	가산비율
행 정	일반행정	변호사, 변리사	5%
세 무	지 방 세	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	
사회복지	사회복지	변호사	
보건, 의료기술	보건, 의료기술	임상심리사 1·2급	

○ 기술직군(연구직 포함) / “붙임 5”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

-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%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가산함

구 분	6 . 7급, 연구사		8 . 9급	
	기술사, 기능장, 기사	산업기사	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	기능사
가산비율	5%	3%	5%	3%

* 단, 해당분야 자격·면허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(직류)은 가산점 미적용 (전산, 사회복지, 사서, 간호, 지적, 운전, 의료기술, 선박항해, 기계운전, 수의, 약무, 수 의연구직 가산점 미적용)

*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거 하나만을 가산함

마.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

- 위의 ‘나’항과 ‘다’항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되며, ‘나’항과 ‘다’항은 ‘라’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됩니다.
-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(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)에 지방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www.local.gosi.go.kr)에 접속하여 자격증 종류 (가산비율) 및 자격번호(보훈번호)를 입력하여야 합니다.
 - 제1회 임용시험: 6. 5.(토) 09:00 ~ 6. 7.(월) 18:00 / 기간내 24시간 접수
 - 제2회 임용시험: 10.16.(토) 09:00 ~ 10.18.(월) 18:00 / 기간내 24시간 접수

- * 가산특전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1.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

가. 대전광역시 자체 출제: 문제 비공개 (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)

-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을 제외한 과목(34과목)으로 문제 내용을 응시표 등에 이기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나.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: 문제 공개 (시험종료 후 문제책 미회수)

- 제1·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일부 과목(53과목)

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(6.5)	8.9급: 국어, 영어, 한국사,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, 사회, 과학, 수학, 지방세법, 회계학(회계원리,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포함), 컴퓨터일반, 정보보호론, 사회복지학개론, 자료조직개론, 정보봉사개론, 기계일반, 기계설계, 전기이론, 전기기기, 화학공학일반, 공업화학, 재배학개론, 식용작물, 조림, 임업경영, 간호관리, 지역사회간호, 화학, 환경공학개론, 응용역학개론, 토목설계, 건축계획, 건축구조, 지적측량, 지적전산학개론, 재난관리론, 안전관리론 / 37과목
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(10.16)	7급: 국어(한문 포함), 헌법, 행정법, 행정학, 경제학원론, 지방자치론, 지역개발론 / 7과목 9급(고졸경채 포함): 물리, 전기이론, 전기기기, 기계일반, 기계제도, 토목일반, 측량, 건축계획, 건축구조 / 9과목

다.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를 통하여 공개합니다.

-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: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
-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: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

12.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

- 실시방법: 선발예정인원의 120%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 -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을

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
13. 응시자 유의사항

-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, 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(전보)이 제한됩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(<http://daejeon.go.kr>)에 공고합니다.
-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·누락이나 중복지원,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- 시험당일은 응시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유효한 여권,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),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-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,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,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(휴대폰, PMP, MP3, 무선호출기 등) 및 전산기기(전자계산기, 전자수첩 등)를 휴대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「행정정보의 공동이용(전자정부법 제36조)」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제2회 임용시험 중 고졸학력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최종학력이 고졸(2021.1.1.현재 대학중퇴자 포함) 이어야 하며, 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 학력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
-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매 과목 과락(40점 미만)이 있을 경우, 경력경쟁은 매 과목 과락(40점 미만) 또는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답안지 작성은 OC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「컴퓨터용 흑색사인펜」만을 사용하여 하며,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당해 문항이 영점 처리 될 수 있습니다.
- 답안지에 수정테이프를 사용 할 수 있으며, 그 외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한 경우 해당 문항은 영점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7급 공채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·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.
- 7급 공채시험에서 영어·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또한 영어·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·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됩니다.
-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되므로 시험 단계별 공고문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라며,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.

14. 금번(2021년) 시험부터 달라지는 사항

-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, 한국사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.
- 7급 수의직·약무직, 9급 운전직은 경력경쟁임용방식으로 변경됩니다.
-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지방직 공무원 7급 및 8·9급 임용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의 1개 시험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중복하여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「국가기술 자격법」에 따른 통신·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(가산점 0.5~1%)이 폐지됩니다.

15. 다음(2022년, 2023년) 시험부터 달라지는 사항

가. 2022년도부터 달라지는 사항

- 9급 공채시험의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점수 제도는 폐지되며, 일반행정 직류는 사회, 과학, 수학이 일반행정 직류를 제외한 직류는 행정학개론, 사회, 과학, 수학이 시험과목에서 제외됩니다.

나.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사항

- 기술계 고졸(예정)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(면접시험)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☎ 042-270-2971-3)

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(<http://daejeon.go.kr>)의 『시험공고』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.